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5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, 충청북도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
나.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
다.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지도·감독 등(안 제5조 ~ 안 제8조)

라.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)

마.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0조 ~ 안 제11조)

바. 분과위원회, 비밀의 누설금지 및 포상 등(안 제12조 ~ 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안배경 및 필요성

○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과학기술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,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

- 또한,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,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·기능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
- 특히, 위원회 운영을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하여,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

나.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

- 이 전부개정안은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- **안 제1조와 안 제2조**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
 - 특히, 안 제2조에서 복잡하게 열거된 “연구기관”의 정의를 목으로 구분하여 단순화 및 연결관계를 명확히 함
- **안 제3조**는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연구개발 강화 및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진흥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그 책무를 명확히 함
- **안 제4조**는 법 제7조(과학기술기본계획)와 제8조(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)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명시함
 - 특히, 법 제7조제4항⁵⁾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

5) 과학기술기본법 [시행 2022. 12. 11.] 제7조(과학기술기본계획)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-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등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안 제5조는 과학기술진흥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
 - 안 제6조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안 제7조는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
- 안 제8조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규정된 예산지원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 - 지원받은 예산에 관한 보고 및 제출된 서류 검토, 지도·감독 및 평가, 이에 관한 보완 및 개선, 시정 요구 등을 명확히 함
-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립·기능·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
 -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것으로 성격이 유사한 현행 제9조(위원회 설치)와 제10조(위원회 기능)를 통합하여 1개 조문으로 구성함
 - 안 제10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⁶⁾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한 것으로 현재 위원회의 위원이 19명인 점을 감안할 때, 적정하다고 판단됨

6)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[시행 2022. 12. 11.] 제9조(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)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(이하 “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
2.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말도록 할 것
3. ~ 6. (생략)

- **안 제11조**는 위원장의 역할과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,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, 위원회 활성화는 물론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 등의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였음

* 특히,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여 2014년 이후로 정비되지 않은 「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을 분리·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○ **안 제12조와 안 제13조**는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활동에 관해 관계 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함

- 특히, **안 제12조**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사한 위원회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책과 소관 위원회를 과학기술위원회 분과위원회 아래로 두어 각 위원회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

* 다만,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한 만큼 시행규칙의 신속한 정비가 요구됨

○ **안 제14조**는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, 관계자의 사기진작과 과학기술진흥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

○ **그 밖에** 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잘못된 사용된 약어, 띄어쓰기 및 외국어 표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, 복잡한 표현 및 어색한 문장 등을 정비하고, 불필요한 조항은 관련 근거에 따라 삭제⁷⁾하였음

7) 현행 제14조(위원의 해촉)와 제16조(실비보상)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와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적용에 따라 관련 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

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이 조례안은 법에 따라 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,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
- (타당성) 또한, 위원회 설치·기능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위원회의 개최 주기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
- (법적합성)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행규칙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